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2. 효력발생일 : 2022.11.25
3. 정정사유 : 이익분배 변경(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이익분배 변경(매매 및 평가이 익 유보)	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 <추 가>한다. <신설>	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금의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 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이익분배 변경(매매 및 평가이 익 유보)	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 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 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 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<추가>	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합투 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 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 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 니다. 1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이익 2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

		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--	--	----------------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효력발생일 변경 반영	2022년 11월 04일	2022년 11월 25일